

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 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77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11. 9.

제출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23년 12월 31일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, 관련법 개정 및 회계관직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(안 제7조)

나. 관련법 개정 및 회계관직 명칭 등 변경(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)

3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: 따로 붙임

4. 근거법규: 따로 붙임

가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4항

나. 「의료급여법 시행규칙」 제28조

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사항: 해당사항 없음

나. 규제사무 심의: 해당사항 없음

다.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: 원안가결(기획예산실-15308, 2023. 8. 25.)

라. 성별영향 평가: 개선사항 없음(가족복지과-36868호, 2023. 9. 14.)

마. 입법예고: 2023. 9. 11. ~ 10. 2.(21일간) / 의견없음

바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”를 “「의료급여법」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의 대불 및 그 밖의”를 “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비와 이와 관련된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기금담당관은 노인장애인과장”을 “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부서장”으로, “담당주사”를 “담당 계장으”로 한다.

제4조를 “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기금담당관”을 “기금운용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, “독촉고지는”을 “독촉장은”으로,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별지 1호서식과 별지 2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 개정안

납입고지서 (수납기관보관용)				영수필통지서 (구청보관용)				영수증 (납부자보관용)															
제 호		년도		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		제 호		년도		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		제 호		년도		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							
상환금		부당이득금		상환액		미납액		상환금		부당이득금		상환액		미납액		상환금		부당이득금		상환액		미납액	
내용(원)								내용(원)								내용(원)							
관)				항)				관)				항)				관)				항)			
목)				목)				목)				목)				목)							
납 부 자	주소						납 부 자	주소						납 부 자	주소								
	성명							성명							성명								
금		원		금		원		금		원		금		원		금		원		금		원	
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																							
년 월 일																							
계좌납부시:																							
납입장소: 전국 농협중앙회, 단위조합																							
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운영관(인)																							
위 금액을 납부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																							
년 월 일																							
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운영관 귀하																							
위 금액을 영수합니다																							
년 월 일																							
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운영관 (인)																							

독촉장 검 납입고지서 (수납기관보관용)				영수필통지서 (구정보관용)				독촉장 검 영수증 (납부자보관용)															
제 호		년도		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		제 호		년도		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		제 호		년도		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							
상환금		부당이득금		상환액		미납액		상환금		부당이득금		상환액		미납액		상환금		부당이득금		상환액		미납액	
내용(원)								내용(원)								내용(원)							
관)				항)				관)				항)				관)				항)			
목)				목)				목)				목)				목)							
납 부 자	주소						납 부 자	주소						납 부 자	주소								
	성명							성명							성명								
금		원		금		원		금		원		금		원		금		원		금		원	
<p>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</p> <p style="margin-left: 100px;">년 월 일</p> <p>계좌납부시: _____</p> <p>납입장소: 전국 농협중앙회, 단위조합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운영관(인)</p>																							
<p>위 금액을 납부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</p> <p style="margin-left: 100px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운영관 귀하</p>																							
<p>위 금액을 영수합니다</p> <p style="margin-left: 100px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운영관 (인)</p>																					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의료급여법」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----- ----- ----- ----- --.</p>
<p>제2조(세입과 세출)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(이하“회계”라 한다)는 의료급여기금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, <u>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의 대불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.</u></p>	<p>제2조(세입과 세출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비와 이와 관련된 ----- ----- --.</p>
<p>제3조(회계공무원의 임명) 이 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<u>기금담당관은 노인장애인과장,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.</u></p>	<p>제3조(회계공무원의 임명) ----- ----- --- <u>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부서장</u>----- -- <u>담당 계장</u>--.</p>
<p>제4조(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) 「지방재정법」 중 공무원의 책</p>	<p>제4조(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) <u>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해서</u></p>

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.

제5조(수입) ① 기금담당관이 보조금을 제외한 기타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, 독촉고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.

제7조(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하되,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는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
제5조(수입) ① 기금운용관-----

-----.

② 제1항에 따른 -----
----- 독촉장은
----- 따른다.

제7조(존속기한) -----
----- 2028년 12월 31일-----

-----.

근 거 법 규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□ 「의료급여법 시행규칙」

제28조(기금의 관리·운영) ③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(이하 “기금계정”이라 한다)을 설정·운영하여야 한다.

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2호
 -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

2. 미첨부 사유

- 2023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그 비용이 공개된 경우로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.

3. 작성자

- 소 속: 노인장애인과
- 직 급: 지방사회복지서기
- 성 명: 윤혜린
- 연락처: (052)290-3583